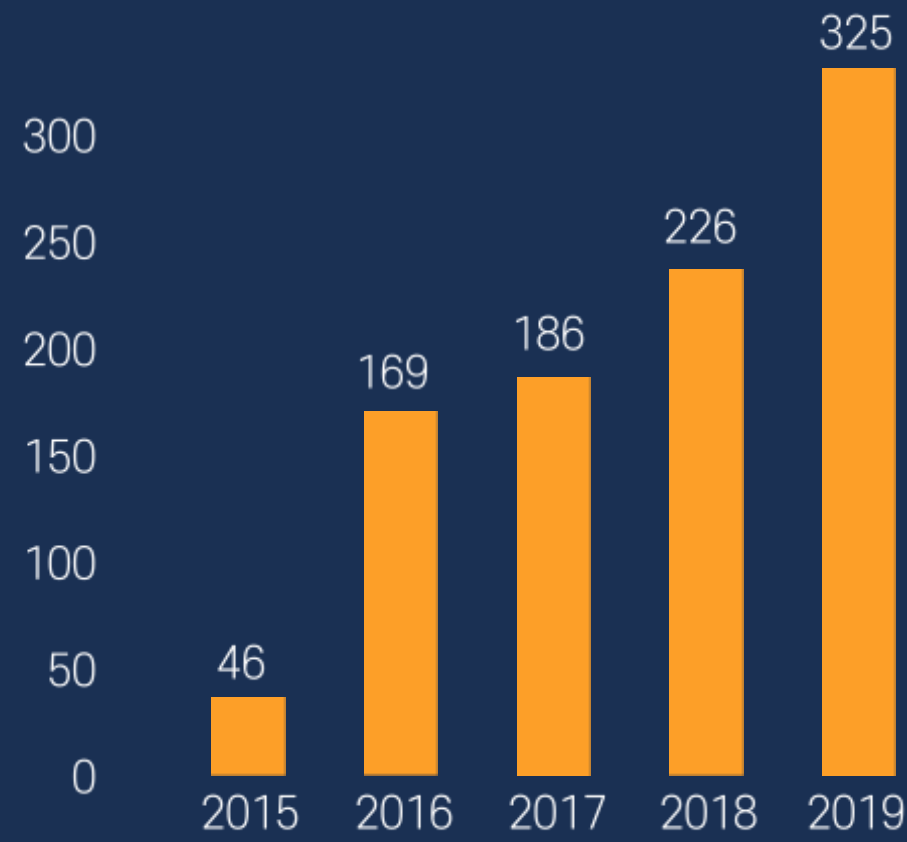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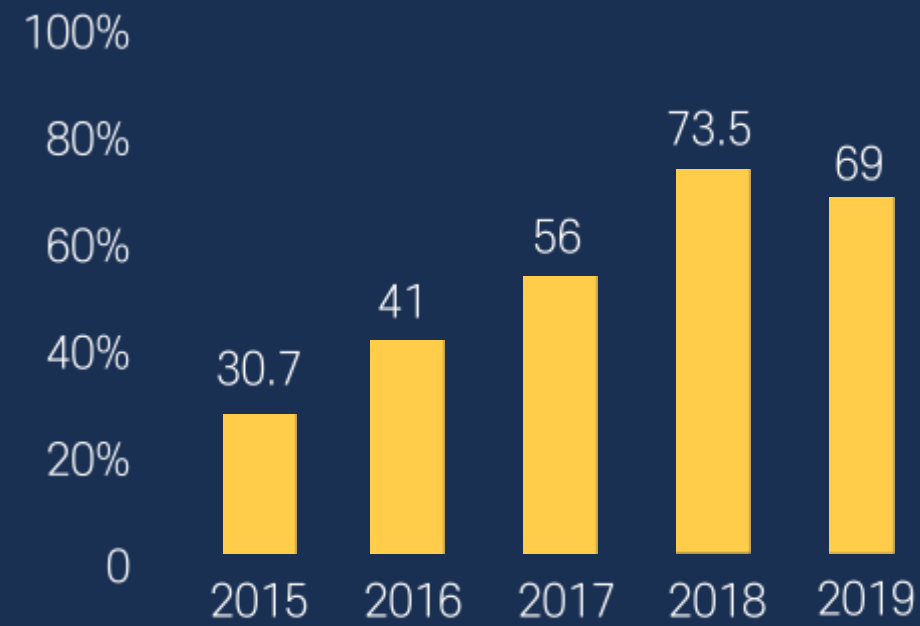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과 절차**

정신질병 산업재해



정신질병 산재신청 건수



정신질병 산재 승인률

✓ 정신질병에 대한 인식과
승인기준의 한계

정신질병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재법에 규정된 정신질병은 **예시적 규정**

✓ 정신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절차



재해자상담



산업재해신청



재해조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재해상담 : 확인사항

치료과정

- ✓ 진단명
- ✓ 현재 상태
- ✓ 과거 치료 경험 등

업무내용

- ✓ 사업의 종류
- ✓ 수행한 업무
- ✓ 근로자 수
- ✓ 근로시간 등

업무스트레스

- ✓ 일상적 업무스트레스
- ✓ 감정노동
- ✓ 일터괴롭힘
- ✓ 성희롱 등

조력자 유무

- ✓ (사건의 경우) 목격자 유무
- ✓ 동료근로자 진술 등

자료수집

- ✓ SNS
- ✓ 메모
- ✓ E-mail
- ✓ 통화 기록 등

기타

- ✓ 산업재해 신청목적

재해상담 : 질문사항

보상의 종류

- ✓ 휴업급여
- ✓ 요양급여
- ✓ 위자료
- ✓ 타 보험과의 관계

처리기간

- ✓ 소멸시효
- ✓ 재해조사 기간
-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타 질문

- ✓ 승인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 ✓ 산업재해 승인되었을때 실익이 있나요?
- ✓ 불승인되었을 때 재심절차가 있나요?

재해상담 : 보상관련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요양급여 : 급여항목 위주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 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험급여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신체적 결손이 남게되는 경우 노동력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

간병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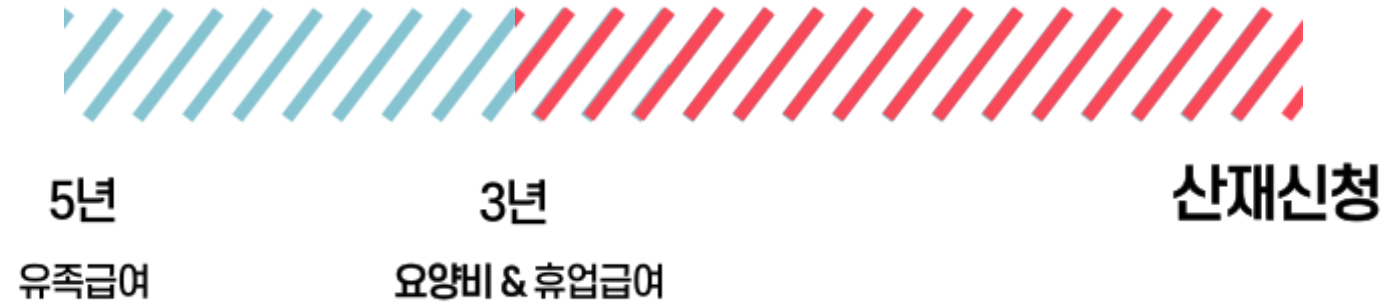
요양을 종결한 산재 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휴업급여 대신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재해상담 : 처리기간

소멸시효



신청일로부터 3년 전까지의 요양비 휴업급여

신청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유족급여

재해조사 & 질병판정위원회

소요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도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번호	처리기간	7일
이름(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	

✓ 제외되는 기간

- 1.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기간
- 2. 사업장, 의료기간 등 조사에 걸리는 기간
- 3. 진찰요구에 따른 소요 기간
- 4. 서류보완에 걸리는 기간
- 5. 역학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 6. 보험가입자의 통지 및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 산업재해 신청 : 재해경위서

재해경위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산업재해 신청 : 재해경위서

재해발생 경위 및 요양급여 신청 이유서(수정)

신청인: 이 성 민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9-4 경신빌딩 5층 501호 반올림

전화: 02-3496-5067, 팩스: 02-6442-5065

상 병 명: 불안장애

진 단 일: 2020. 11. 7

근무사업장:

2017.12. - 2018.08.	반올림
2018.09. - 2019.02.	노무법인 선
2019.03. - 현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재해발생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기초정보

재해자 000은 0000.00.00.생 남성으로 0000.00.00. A병원에 입사해 약 00년 00개월간 수술실 간호사로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학력 및 이전 직업력 참조) 재해자는 수술실에서 00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2. 진단경위

재해자는 2000.00.00. 이후 00증세(기타 재해자가 경험한 증상 상세히 기술)가 발생하여 00소재의 병원에 내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3. 재해에 이르게 된 경위

2000.00.00. 재해자는 B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C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사고발생 경위 자세히 서술)

재해경위서 작성예시

4. 업무스트레스 요인

- ✓ 직무요구도
- ✓ 직무자율성
- ✓ 노력보상불균형
- ✓ 직업불안정성
- ✓ 사회적지지
- ✓ 물리적환경
- ✓ 고객응대업무
- ✓ 업무상 긴장
- ✓ 업무관련사고
- ✓ 폭언 · 폭력 · 성희롱 · 괴롭힘 · 차별
- ✓ 업무의 양과 질 변화
- ✓ 업무상 실수 · 책임
- ✓ 업무부적응
- ✓ 민원 · 고객과의 갈등
- ✓ 회사와의 갈등 · 직장내 갈등
- ✓ 배치전환

- ✓ 처음부터 한가지 스트레스 요인에만 집중하기 보단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 ✓ 업무와 관련한 일상에서 증거자료를 꼼꼼히 확보하여
재해경위서에 기록 (SNS, 일기장, 통화기록, E-mail 등)
- ✓ 재해경위서의 내용은 화려하기보단
사실관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

| 산업재해 신청 : 상병에 따른 주요쟁점

우울장애

- ✓ 직무요구도
- ✓ 사회적지지
- ✓ 노력-보상 불균형
- ✓ 직무불안정성
- ✓ 위협 및 폭력
- ✓ 불공정성 등

불안장애

- ✓ 직무요구도
- ✓ 직무 변경
- ✓ 책임 변경 등

적응장애

- ✓ 다양한
- ✓ 스트레스성 사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 업무와 관련한
- ✓ 심리적 외상성 사건

자해행위

- ✓ 사건 발생 이전의
- ✓ 정신적 이상상태

| 산업재해 신청 : 구비서류

1.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유족급여신청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 주치의 소견서(사망진단서) 거부시 진단서로 같음
3. 의무기록 치료받은 의료기관
4.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10년) 건강보험공단
5. 고용보험내역서 고용보험공단
6. (유족급여 청구의 경우) 가족관계서류

재해조사

▶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요인별 세부유형	구체적 내용 및 발생시기
업무관련사고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고나 화재의 체험 <input type="checkbox"/> 비참한 사고나 화재의 목격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합·복합·성취감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복합·복합 <input type="checkbox"/> 성취감 <input type="checkbox"/> 플래카메라·도촬 등 <input type="checkbox"/> 2차 가해여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업무의 양과 질 변화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업무량 증가 <input type="checkbox"/> 업무내용(부서이동)의 변화 <input type="checkbox"/> 근무형태(교대제 등)의 변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업무의 실수·책임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재해 발생 초경 <input type="checkbox"/> 회사 손해 초경 <input type="checkbox"/> 신규 사업 담당 <input type="checkbox"/> 회사 재건 담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원·고객과의 갈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지속된 인원·불만 <input type="checkbox"/> 불확실 인원·불만 <input type="checkbox"/> 기타	
회사와의 갈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고·부적 <input type="checkbox"/> 인사조치·감사	

▶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증상발생전 업무시간	1주일 전	40 시간 00 분
	4주간 1주 평균	40 시간 00 분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	12주간 1주 평균	40 시간 00 분
	신정근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주 진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해자 진술 <input type="checkbox"/> 출근부 및 작업일보 <input type="checkbox"/> 출퇴근 카드 <input type="checkbox"/> 컴퓨터 로그기록 <input type="checkbox"/> 교통카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small>※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록을 포함하여 작성하십시오.</small>)
	<input type="checkbox"/> 직무요구도	
	<input type="checkbox"/> 직무자율성	
	<input type="checkbox"/> 노력보상불균형	
	<input type="checkbox"/> 직업불안정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지지	
	<input type="checkbox"/> 물리환경	
	<input type="checkbox"/> 고객응대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중 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 등을 통해 업무를 하시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평소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 • 하루 응대 고객 수 ()
	<input type="checkbox"/> 긴장이높은업무	<input type="checkbox"/>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는 업무 <input type="checkbox"/> 위험회피책임을 있는 업무 <input type="checkbox"/> 인명과 사물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나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 <input type="checkbox"/> 극히 위험한 환경을 다루는 업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재해조사: 보험가입자의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자 의견 통지서			
재해자 (신청인)	①신청인명		②재해일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일
	③사업장명		
	④사업장 주소		
<p>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양급여신청(유족급여·장의비)에 대하여 보험가입자 의견이 붙임과 같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니,</p> <p>- 추가 의견이나 제출 자료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뒷면 서식에 따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2. 만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가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이 없으면 추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p> <p>- 그간에 제출 또는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문의: 담당자 000 ☎ 02- - FAX 000-000-0000)</p> <p>붙임 1. 보험가입자 의견서 2.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 사본</p>			
<p>※ 보험가입자 의견 중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되고 제공될 수 있습니다.</p>			

보험가입자 의견서				
재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해발생일		
보험가입자 의견서 (※ 별지 사용 가능)	1. 신청인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채용일자: 년 월 일	국 적:	직 종:	
	출근시간:	퇴근시간:	작업개시시간:	
	종사상 지위: <input type="checkbox"/> 상용 <input type="checkbox"/> 임시 <input type="checkbox"/> 일용		고용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직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보험가입자 (사업주)와의 관계	사업주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실제사업주(동업자포함) <input type="checkbox"/> 하수급사업주	
		친인척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자녀 <input type="checkbox"/>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친인척()	
	담당업무	임금 (월급·일급·시간급 등)		
	재해발생 이후 근무이력			
	2.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3. 위 2번 질문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Web발신]

고객님(사건번호 2019-000*)께서
요양급여 신청하신 질병은 '20.02.06(목요일)
14:01시 서울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사에서 조사한 내용 외에 추
가 또는 변경할 내용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02-2280-****,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통상 심의회의 일주일 전 통보
- ✓ 위원장 포함 7인 위원
- ✓ 참석하여 의견진술 가능
- ✓ 최종의견진술서 등 추가자료 제출 가능

Q. 질병판정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요?

산업재해에 대한 오해

01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거서식

수술할 경우 기재	수술부위:	수술예정일자:	년 월 일
요양급여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에 관한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청구)합니다.	
사업장명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재지	한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험가입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p>※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외 휴업재해에 대해서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권서에 산업재해보상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온 받을 수 없으면 확인을 생략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p> <p>※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현재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서식)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산업재해에 대한 오해

02 개인의 과실이 존재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대법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신증을 기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에 대한 오해

03 정신질병과 관련한 개인력이 확인되면 승인될 수 없다?

대법2012.2.9. 선고 2011두256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 산업재해에 대한 오해

04

개인의 내성적 성격 등이 확인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 2011.6.9. 선고 2011두3944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승인사례

실수에 대한 정신적 압박 및 회사에 끼칠 손해로 스트레스가 가중돼 자살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조사

- ✓ 재해자의 과실로 인해 개발중인 제품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제품 출시 지연 등으로
정신적 압박 및 회사에 끼칠 손해로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음
- ✓ 같은 시기 재해자가 소속된 팀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재해자는 다른 팀원들
보다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의 빈도가 높았음

판단

업무와 관련한 실수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추궁에 대한 불안감 등 주관적 부담감이
상당했음이 동료진술에서 파악되며, 업무시간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과
사업장에서 일치된 진술로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외적 스트레스 요인
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승인사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응장애
및 공황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

조사

- ✓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어 학부모들에게 폭력, 의심, 협박을 경험함
- ✓ 재해자는 위 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였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

판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학부모들의 무조건적인 폭력, 의심, 협박 등으로 신청인이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이 확인됨. 신청인이 경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응장애 및 공황장애 두개 상병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

승인사례

우울증과 관련한 과거 진료 이력이 확인되지만 신청인이 경험한 업무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

조사

- ✓ 신청인은 반복된 대기발령 및 해고를 경험함
- ✓ 사용자의 처분(대기발령 및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툼
- ✓ 업무로 부터 소외되고 동료근로자로부터 따돌림을 당함

판단

신청인의 과거 병력을 참조할 때 정신질환에 대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내용 검토 결과 일반적인 근로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된 점 (대기발령 및 부당해고)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승인사례

직장상사로 인한 업무스트레스에 더해 사업장의 부적절한 대처방법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을 근거로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

조사

- ✓ 직장상사의 반복된 폭언 및 위협상황을 경험함
- ✓ 위 사안에 대해 사용자에게 고충을 접수하였으나 부적절한 조치로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제공함
- ✓ 신청인은 내부고발자로 몰리게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함

판단

조사결과 직장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업장 측의 대처방법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적응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